

# 울 산 지 방 법 원

## 제 2 민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	2013나8137 손해배상(산)
원고, 항소인	1. A 2. B
피고, 피항소인	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운 담당변호사 허범행
제 1 심 판 결	울산지방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2가단40997 판결
변 론 종 결	2014. 3. 19.
판 결 선 고	2014. 4. 16.

### 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 A에게 39,559,337원, 원고 B에게 4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. 12. 8.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문춘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민희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장혜정